

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 포상 및 징계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106조 및 제10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첨단융합학부 학생 포상 및 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구성)**
-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② 학부장, 학생부학부장, 각 전공주임 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은 학부장, 부위원장은 학생부학부장이 된다.
 - ③ 학부장은 첨단융합학부 소속 외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해당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와 기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, 관련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.

- 제3조(회의)**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 - ③ 학생 징계의 경우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107조제3항에 의한 징계 외에 별도의 교육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· 의결한다.

1.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10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
2. 기타 학내외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
3. 첨단융합학부 자체 포상 신설과 포상 기준 및 대상자의 선정
4.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107조 및 「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」 제5조에 따른 징계
5. 기타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
제5조(준용)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대학교 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」과 「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」을 준용한다.

부칙 (2024. 3. 1.)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